

G-Welfare Weekly Report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시행(2015. 7.1.)에 따른 쟁점과 대응

01 주요 내용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2014. 12. 30. 제정, 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은 복지대상자 선정과 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법률
 - 구체적으로, 2012년 전면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행하는 세부적인 방안과 절차를 마련
 - 같은 대상자에게 복지혜택이 중복되거나 ‘송파 세모녀’와 같이 도움이 절실한 계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을 강화
-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을 통해 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 하에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주요내용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행하는 세부적 방안과 절차 마련

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 균형발전의 법적근거 마련

핵심	내용	조항
① 사회보장급여 이용·관리의 일반적 절차 규정	- 급여의 신청, 수급자격의 조사, 급여의 결정·제공, 정확한 대상자 선정 및 복지사업 수행의 기본적 절차와 지원근거 제공	제5조 ~ 제9조
	- 급여 적정성 확인조사, 변동·중지, 환수 등 일련의 관리절차 마련	제19조~ 제22조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 및 제3조 제1항	- 단전, 단수, 가스, 건보료 체납 가구 정보 등을 복지대상자 발굴에 이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구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제12조
	- 복지사각지대 발견 시 신고의무 (의료인, 교사, 방문간호 종사자, 통, 이장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 대상자를 발견할 때 신고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지원대상자 발굴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규정	제13조
민관협력	- 민관협력 기구의 구성, 지원계획 수립 : 보건의료·사회복지 외에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복지계획 → 지역사회보장계획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설	제14조 제35조~ 제39조 제41조 ~ 제42조

핵심	내용	조항
전달체계	④ 지역 간 사회보장 균형발전 -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지역 간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 도지사는 특정분야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하여 지원 가능	제45조 ~ 제48조
	⑤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운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이용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사회보장정보원) - 사회보장정보 표준화 등 협의를 통해 사회보장정보협의체 운영 (정보검증, 연계강화 등) - 정보보호대책 수립시행, 정보 침해행위 금지 및 시정요구, 위반시 고발, 징계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제49조 ~ 제53조

02 변화 전망 및 쟁점 사항

- 법제정을 통해 보장영역의 확대, 민간전달체계의 개편 및 공공과의 협력 강화, 읍면동의 이용자 발굴 기능 강화 등의 변화가 기대됨
 -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서비스와 공급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급여에서 벗어나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다양한 분야(보건으로,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에 걸친 광범위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운영
 - 이용자 발굴부터 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역할 등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가 사도-사군구-읍면동 단위까지 확대되고 실제 이용자 발굴이 읍면동 또는 권역단위로 변경되어 읍면동의 기능이 강화될 전망
 - 사회보장 영역이 광범위해지고 제공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늘어나면서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될 전망이며, 다양한 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민간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상기와 같은 변화 전망과 함께 몇 가지 쟁점이 예상됨
 - **쟁점 1) 전달체계를 공공주도형 민관협력 방식으로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으로 복지직 공무원의 업무과중 및 민간과의 갈등 우려**
 - 읍면동 협의체의 경우 위원장을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 호선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간사는 복지팀장이 맡는 등 공공성이 강화되어 복지자원발굴의 법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2014년 복지부의 사각지대 일제조사로 약 24만 명의 지원 대상자가 발굴되었고, 대부분 민간자원으로 연결된 사례가 더 많아 공공주도의 운영에 따른 자원발굴의 어려움 및 민간과의 역할 갈등 우려가 예상됨
 - 사군구 및 읍면동 담당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위원참여(간사)·운영실적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하여 필연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이 발생하는 모험임
 - **쟁점 2)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
 - 사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자문하도록 되어 있어 읍면동의 자율성 침해 우려가 있고, 읍면동 인적 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구성된 기존의 민관협의체나 복지위원 기능과 상충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 보건복지부는 민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전환 또는 확대 개편하거나 복지위원을 협의체의 당연직 민간위원으로 위촉 하는 등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 **쟁점 3) 위기를 맞은 가정의 정보를 쉽게 파악하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와 인권 침해의 우려도 상존**
 -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의 구체적인 정보와 자료를 공유해야 가능하므로 개인정보와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

읍면동의 이용자 발굴 기능 강화

쟁점1) 복지공무원의 업무과중

쟁점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의 적절성

쟁점3) 개인정보와 인권 침해 우려

03 경기도의 대응 방안

- 경기도 단위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및 사군과의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사무국 설치 등 연계 방안 및 경기도 남·북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마련
 - 법 제40조에 명시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에 상근인력이 있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분과별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도 단위 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간 연계를 위해 정기적인 회의 체계를 구축 또는, 사군 협의체에서 제안한 안건을 심의하는 소위원회 구성·운영
 - 본 법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법 제46조에 명시된 '지역사회보장 균형 발전센터'를 설치하여 31개 사군간 격차해소를 위한 기준 마련 등 전략적 접근 필요
- 읍면동 단위의 민관협력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사회복지 인력 확대 및 전달체계 개편
 - 읍면동 협의체 구성을 위해 각 읍면동 별 최소 1~2명의 인력 확대가 필요하므로 2017년 까지 사회복지공무원 7천명 확대 인력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이와 별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군별 인력 충원 계획 수립이 필요
 - 민관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권역별 무한돌봄네트워크팀과 융합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역할 조정 및 협력체계 구축
- 이용자 발굴 및 관리에 있어 개인정보와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법 자체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돕기 위한 관련 공무원, 경기도 의회,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등 현장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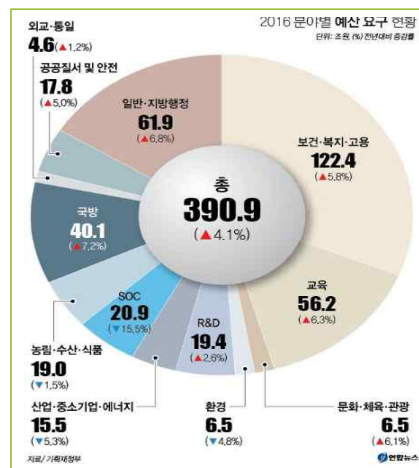
경기도 남북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 마련

사회복지 인력 확대 및 전달체계 개편

개인정보 보호 관리 및 교육 실시

2. 내년 예산요구 390조9000억 보건·복지 중심 '4.1% 증액'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6년도 정부 각 부처의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390조 9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55000억원 (4.1%) 증가하였으며, 4.1% 증가율은 최근 몇 년간 가장 낮은 수준임
-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교육, 문화, 국방 8개 분야의 요구액이 올해 예산보다 증가
- 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로 5.8% 증가



〈 '16년 예산 요구 현황 〉 (조원, %)

구분	'15예산 (A)	'16요구 (B)	증감 (B-A)	%
총 지출	375.4	390.9	15.5	4.1
예산	260.1	275.0	14.9	5.7
기금	115.3	115.9	0.6	0.5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5.6.17.)

〈향후 추진일정〉

-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16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 9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
-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보조사업 수 10% 감축 등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국민체감도 향상에 주력

02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고용과 복지를 한번에, 「고용복지+센터」

고용복지+센터 :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복지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및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 제공

- 고용복지+센터는 남양주시를 시작으로 '14년에 10곳이 개소되어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수요자 중심형 융합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며, 고용센터(노동부), 일자리센터(자치단체), 복지지원팀(복지부, 자치단체), 새일센터(여가부), 서민금융센터(금융위), 제대군인지원센터(보훈처)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정부3.0 모델임

* 확정형은 복합문화공간(문화부)도 결합(서산, 동두천에서 운영 중)

운영방향

- 통합서비스** : 한 공간에서 다양한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방문자의 편의 도모
- 원스톱** :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필요·적합한 고용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 획득, 서비스 상담·신청·수령 가능
-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한 자립 지원**
 근로빈곤층의 취업장애요인 등을 조기 해소시킴으로써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빈곤층을 고용의 영역으로 끌어내어 탈수급을 지원
 차상위계층 등은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
- 협업** : 참여기관 간 협업 및 역할분담을 통해 인력 및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성 제고, 또한 합동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시너지 발휘

- 정부는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고용복지+센터'를 올해 중 전국 30곳에 새로이 설치하기로 함. 행정자치부와 관계부처는 자치단체 수요를 파악한 뒤 행정수요, 민원 접근성, 자치단체 의지 등을 감안해 현장실사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차로 21곳의 설치 대상지역을 발표함

1차 설치지역(21개소)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고용복지+센터

03 FACT CHECK

기본소득 개념에 근거한 '청년배당' 정책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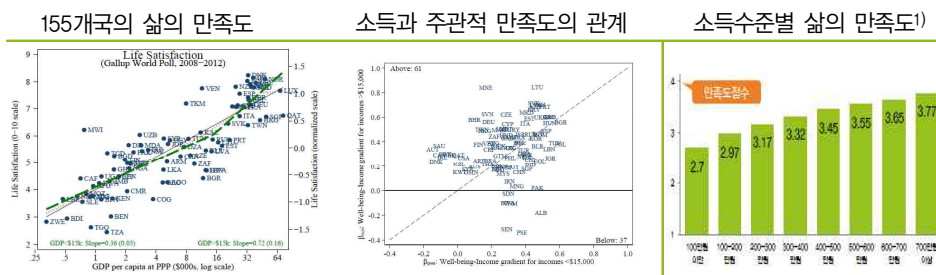
- 기본소득(Basic Income)은 성별, 연령, 직업 유무,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국가가 무조건적으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소득
 - 어떤 수준을 기본소득으로 할 것인지, 재원은 어떤 방법으로 마련할 것인지, 기본소득이 보장 되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할 것이라는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이 최대 쟁점
- 기본소득을 최초로 법제화한 나라는 브라질이며,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 발의와 '유럽 시민발의'(European Citizens Initiative) 등이 진행 중
 - 브라질은 2010년 '시민기본소득' 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소득 제도를 세계 최초 전국적으로 시행
 - 스위스는 2013년 12만6천 명이 기본소득 발의안에 서명하였고 2016년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
 - 기본소득 유럽시민발의는 프랑스의 스타니슬라스 주르당이 주도하여 2012년 4월에 시작됨
- 성남시는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배당'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시장이 '2015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에서 언급(2015. 6. 19.)
 -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연령집단, 대상별 예산규모, 급여형태와 전달체계 등 정책 실현을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한 뒤,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현실화 할 것인지를 검토
 - 특히 '청년배당'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성남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와 연계 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지역 소상공인들의 수입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계획

* 무조건성은
i) 필요없는 노동은 없고
ii) 존재 그 자체를 위한 돈(가난을 증명하지 않을 권리)이라는 관점에 기반

* 유럽시민발의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회원국들이 입법을 하도록 압력을 넣는 일종의 청원운동

04 통계로 보는 복지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



NBER, 2013, Subjective Well-Being and Income: Is There Any Evidence of Satiation? 자료 : 통계청, 2013, 사회조사

- 미경제조사국(NBER)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 155개국을 대상으로 소득과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정(正)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었고, 국가를 1인당 국민소득 1만5천달러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1만5천달러 이상인 나라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만족도가 더 크게 향상되었다고 발표함. 이는 소득이 특정 수준을 넘어서면 행복과 소득이 비례하지 않게 된다는 '이스탈린 역설'에 배치되는 결과
- 두 번째 그래프는 98개국의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과 삶의 만족도를 비교한 것으로 두 집단 모두 소득이 증가하면 만족도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통계청의 사회조사(2013)결과도 소득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 점수는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어, 소득을 높이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1) 만족도 점수는 '매우불만족'부터 '매우만족'까지 1~5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전국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소득은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임

2) 부유층의 기준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5천달러 이상, 가난한 사람은 1만5천달러 미만